

[샵매니저분쟁] 백화점 매장관리자 샵매니저의 불법행위와 입점업체 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가합559273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백화점 매장에서 샵매니저가 고객과 사이에서 횡령,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범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그 매장을 운영하는 입점업체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불인정

판결이유: 백화점 입점업체 패션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부정

가) 샵매니저는 입점업체 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백화점 매장에서 회사 제

품을 회사에서 시행하는 판매방법과 영업방침 등에 따라 판매하고, 매일 영업 종료 후 즉시 회사에 당일 판매내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품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회사에서 제품 거래의 규모, 품목 구분, 가격조건 등 영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매일의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마다 판매활동 및 매출을 평가하여 영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면 샵매니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업무위탁계약서 제26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샵매니저를 마치 판매점의 영업점장인 것처럼 활용하여 이를 통해 영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명의사용자 샵매니저의 판매 업무 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여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점업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샵매니저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업무수행 중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 샵매니저가 중국 수입상들의 물품대금을 선결제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돈을 융통하는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영업점장(매니저) 또는 판매직원으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융통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영업점장(매니저) 또는 판매직원으로서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

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물품거래에 편승하여 단기간의 금전 유통을 통해 손쉽게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얻으려 한 원고들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입점업체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사자문, 계약분쟁,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계약, 합의 등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